천·년·의·비·상
전라북도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도 보

제2874호 2022. 12. 9.(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5174호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전라북도 조례 제5175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전라북도 조례 제5176호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전라북도 조례 제5177호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전라북도 조례 제5178호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전라북도 조례 제5179호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19
○ 전라북도 조례 제5180호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전라북도 조례 제5181호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 27
○ 전라북도 조례 제5182호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28
○ 전라북도 조례 제5183호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전라북도 조례 제5184호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33
○ 전라북도 조례 제5185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전라북도 조례 제5186호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36
○ 전라북도 조례 제5187호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 39
○ 전라북도 조례 제5188호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 41
○ 전라북도 조례 제5189호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 전라북도 조례 제5190호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 전라북도 조례 제5191호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50
○ 전라북도 조례 제5192호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 53
○ 전라북도 조례 제5193호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55
○ 전라북도 조례 제5194호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56
○ 전라북도 조례 제5195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 61
○ 전라북도 조례 제519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63
○ 전라북도 조례 제5197호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6
○ 전라북도 조례 제5198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 전라북도 조례 제5199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 전라북도 조례 제5200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75
○ 전라북도 조례 제5201호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76
○ 전라북도 조례 제5202호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79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202호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1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98호 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82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99호 창평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안) ····· 83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00호 내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84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01호 망산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85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05호 금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86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07호 군산2국가산업단지 휴스틸 진출입로 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90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09호 택시 감차계획(2개 사업구역) 고시 ····· 106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1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108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1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109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26호 행정심판 재결 공시송달 공고 ····· 110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31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 112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33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 113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3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114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3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 118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12. 2.(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 119

시 군

○ 전주시 고시 제2022-217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121
○ 전주시 공고 제2022-28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9호선 외 3개노선)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 122
○ 군산시 고시 제2022-207호 도시계획시설(중로1-91호외2)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26
○ 군산시 공고 제2022-2572호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129
○ 익산시 고시 제2022-20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40
○ 정읍시 고시 제2022-9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우체국)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45
○ 김제시 고시 제2022-1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실시계획인가 고시 147
○ 김제시 고시 제2022-12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150
○ 완주군 공고 제2022-1782호 군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 151
○ 진안군 고시 제2022-140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52

기 타

○ 부안소방서 공고 제2022-14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 155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74호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을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하며, 청구인서명부와”를 “하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라북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전라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 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을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로,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을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75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일 부터”를 “사용일부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관하여는「지방세법」 제21조”를 “관하여는「지방세법」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 중 “감면함에 있어”를 “감면할 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9조의2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9조의2의 개정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76호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전라북도”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 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물품 :”을 각각 “물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 소유”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수령여부”를 “수령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등재후”를 “등재 후”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소요조회중”을 “소요 조회 중”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소요조회기준”을 “소요 조회 기준”으로, “20백만원이상”을 “20백만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홈페이지 및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 및 도 누리집”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20백만원이상”을 “20백만원 이상”으로,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를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을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장부중”을 “장부중”으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제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소속직원중에서”를 “소속직원 중에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소속직원중에서”를 “소속직원 중에서”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77호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고문변호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문변호사”를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유치 통상 등의”를 “투자유치, 통상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를 관리”를 “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78호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나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지출원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야 한다.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2호”를 “영 제20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예산서”를 “예산서와 결산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 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회에 보고”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출자·출연기관은”을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로, “변경된”을 “변경된 보고를 받은”으로, “상임위원회에”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업계획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79호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과「소방기본법」 제10조의 비상소화장치 등의 기타 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범위) 도지사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6조(설치비용 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정산) ①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설비등(제4조 관련)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설비	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설비	예방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대응설비	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피난방화설비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 소방설비등 정의

○ 소방설비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한다.

○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구조설비	( )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기타설비	(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 대응설비	( )		
		□ 피난방화설비	(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심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전라북도지사)		처리기관 (전라북도지사)		처리기관 (전라북도지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서	→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리기관 (전라북도지사)		처리기관 (전라북도지사)		처리기관 (전라북도지사)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80호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우호협력관계”라 함은”을 ““우호협력관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의회”를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사회·문화·관광”을 “경제·사회·교육·문화·관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치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있다”를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국가기관, 국가투자기관, 전라북도내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한다”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사무소”를 “도지사는 해외사무소”로, “위탁기간만료”를 “위탁기간 만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7조의2 중 “의한 파견공무원”을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동 조례 제5조”를 “제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연락관은”을 “도지사는 연락관에게”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를 “도지사는 자문관에게 제9조”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도정”을 “도지사는 도정”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중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의2 중 “「전라북도 포상조례」”를 “「전라북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를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81호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분담금 중 전라북도와 시·군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분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급여지원은 도가 100분의 70을, 시·군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한다.
2. 재가급여지원은 도가 100분의 10을, 시·군은 100분의 90을 각각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82호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라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주거지원 등 지원정책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4.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83호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2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9.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0.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당연직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본문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제척 등)”을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이”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중 “위원회에 필요한”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으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84호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라북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군,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경찰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85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결하기”를 “자문하기”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2조) 전단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두 차례”를 “1회”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86호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전라북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7조에 따른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예방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6.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구축·운영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사법 절차상 필요한 조력 제공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 연계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연계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인식개선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87호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한약”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한방산업단지”란 법 제12조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과 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및 신약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한방산업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존 한의약 상품과 연계한 산업단지 내 관광개발
6.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전라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88호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전라북도와 시·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분담 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비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전라북도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89호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명칭 :”을 “명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치 :”를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능 :”을 “기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4D영상관”을 “영상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제5조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서”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련하여”를 “관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밖에 산업단지”를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중 “임대(이하 “분양”이라 한다)”를 “임대”로, “건축물(이하 “용지”라 한다)”을 “건축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용지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에”를 “도지사는 이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통합하여”를 “통합하여 계약서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13조제2항”으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기간중”을 “납입 후 반환 시까지 기간의”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의 조성사업 완료전까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한”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용지에 대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3조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3월～10월 :”을 “3월～10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월 :”을 “2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입장료의 감면) 테마체험관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영상관 관람료는 감면대상 및 대체 요금 입장에서 제외한다.

1. 입장료 전액 면제

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직계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마.「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바.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

사. 어린이(어린이날에 한정함)

아. 명예도민증 소지자

2.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부안군 거주자

3. 입장료 20퍼센트 감경: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4. 그 밖의 일부 감경: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대체 요금 입장

가.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나. 입장료에 상당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자(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

제26조제1호 중 “정신이상 및 술에”를 “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험물이나”를 “흉기,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의 체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테마체험관내에 다음과 같이”를 “테마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기간은”을 “위탁 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위탁해지시”를 “위탁해지 시”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민·형사상 책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은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37조 전단 중 “단지”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단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3조”를 “「고등교육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다른 법령의 적용)”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단지의 분양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

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4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테마체험관 입장료(제24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입 장 료		비 고
	개인	단체(20인 이상)	
성 인	2,000	1,600	
청소년·군인	1,500	1,200	
어린이	1,000	800	
영상관	2,000		

※ 기 준

- 성 인 :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은 경노 대상임
- 청 소 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
- 군 인 :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대체복무요원을 포함
- 어 린 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초등학생
- 단체입장 :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면제 및 할인 대상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증 소지시) 및 그 유족, 직계가족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시)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자(3개월 유효) ·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 (확인가능시) · 어린이날 어린이 대상 · 명예도민증 소지자	
할 인	· 부안군 거주자 50%(확인가능시) · 단체(20인 이상)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는 기존 중증(1~3급)의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등을 소지한 사람도 포함됨

※ 영상관 관람료는 면제 및 할인 제외

○ 대체 요금 입장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전북투어패스	·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입장 가능	
자원봉사 마일리지	· 입장료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입장 가능	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

※ 영상관 관람료는 전북투어패스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불가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90호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를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50세미만”을 “50세 미만”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3조 중 “확보, 지원하기”를 “확보·지원하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시·군”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도계약에 의하여”를 “별도의 계약을 통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수탁 금융기관”을 각각 “수탁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예탁 받은 금융기관”을 “따른 수탁금융기관”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한다.

①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7명 이내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로 한다.

제10조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 기관”을 “따른 수탁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기관에”를 “수탁금융기관에”로, “수탁기관은”을 “수탁금융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91호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및 공공기관의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 도와 공공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상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고용상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라북도 인권센터에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조) 도지사는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 누리

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개선권고) ① 도지사는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92호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과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 (이하 “도”라 한다) 농업·농촌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대책
3. 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전략

4.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보온자재 설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
3. 질소질비료 절감 사업
4.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 사업
5.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와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자치단체,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93호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저소득 가정 학생”이란 제1호의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수급대상 가정의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일 축하 지원금
2. 설날 명절맞이 지원금
3.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

제4조(지원대상) 교육감은 전라북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지원금액 등)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1년 내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94호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 학교”를 “농산어촌학교”로, “농어촌학교”를 “농산어촌학교”로, “농어촌 교육”을 “농산어촌 교육”으로, “농어촌 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이란”을 ““농산어촌”이란”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촌학교”란”을 ““농산어촌학교”란”으로, “농어촌에”를 “농산어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를 “농산어촌학교에 취학예정인 아동과”로, “학생과 농어촌 학교에 취학예정인 아동”을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촌유학”이란 전라북도 관외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이 전라북도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하여, 도내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유학 협력학교”란 전라북도교육감이 농촌유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촌 교육발전과 농어촌”을 “농산어촌 교육발전과 농산어촌”으로, “농어촌 주민”을 “농산어촌 주민”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교육”을 “농산어촌교육”으로, “농어촌 교육발전”을 “농산어촌 교육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이”를 “내용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어촌”을 각각 “농산어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어촌학교”를 각각 “농산어촌학

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촌”을 “농산어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촌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을 “(농산어촌 자율학교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의”를 “농산어촌의”로, “농어촌 교육”을 “농산어촌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농어촌자율학교”를 각각 “농산어촌 자율학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촌학교”를 “농산어촌학교”로, “농어촌 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어촌학교”를 “농산어촌학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정원확보 및 배치)”를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정원확보 및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어촌학교에”를 “농산어촌학교에”로,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을 “농산어촌학교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어촌학교의 폐교)”를 “(농산어촌학교의 폐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학교”를 “농산어촌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어촌”을 “농산어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농어촌 학생 통학 편의 지원)”을 “(농산어촌 학생 통학 편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어촌”을 “농산어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어촌학교”를 “농산어촌학교”로, “행정적·재정적”을 “각급 학교와 유학생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학교”를 “농산어촌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공포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찾아오는 농어촌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산어촌 학교---------- 농산어촌학교---------- 농산어촌 교육---------- 농산어촌 지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농산어촌”이란 ----------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2.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2. “농산어촌학교”란 ---------- 농산어촌에 ----------.
3. “학부모”란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농어촌 학교에 취학예정인 아동의 보호자를 말한다.	3. --------- 농산어촌학교에 취학예정인 아동과 ---------- 재학중인 학생--------.
<신 설>	4. “농촌유학”이란 전라북도 관외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이 전라북도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하여, 도내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농촌유학 협력학교”란 전라북도교육감이 농촌유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 교육발전과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및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농산어촌 교육발전과 농산어촌 ---------- 농산어촌 주민----------.
제4조(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농어촌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년 농어촌 교육발전	제4조(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농산어촌교육 ---------- 농산어촌 교육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전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내용이 ----------.
1.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목표	1. 농산어촌 ----------
2. 농어촌 교육발전 종합계획	2. 농산어촌 ----------
3.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	3. 농산어촌 ----------
4.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	4. ---------- ---------- 농산어촌학교---------
5. 농어촌학교 교육진흥과 교육환경의 개선 및 발전	5. 농산어촌학교 ----------
6. 다시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6. ---------- 농산어촌 -------
<신 설>	7. 농촌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 ① 교육감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5조(농산어촌 자율학교의 운영) ① --- 농산어촌의 ---------- 농산어촌 교육---------- ---------- 농산어촌자율학교----------.
② 농어촌자율학교는 해당 학군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학·전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농산어촌 자율학교---------- ----------.
제6조(교육지원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 등) ① ------- 농산어촌학교------ ---------- 농산어촌 지역 ---------- ----------.
② 교육감은 한 학년 6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농어촌학교에 복식학급을 둘 수 없다. 다만, 가능한 한 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한 복식학급을 두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농산어촌학교---------- ---. ---------- ----------.
제7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정원확보 및 배치) 농어촌	제7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정원확보 및 배치) 농산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을 정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어촌학교에 ---------- 농산어촌학교 교육과정----------.
제8조(농어촌학교의 폐교)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농산어촌학교의 폐교) ① ----- 농산어촌학교----------.
②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한다. 다만, 의견수렴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농산어촌 ----------. ----------.
제9조(농어촌 학생 통학 편의 지원) 교육감은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 버스 지원 등 통학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산어촌 학생 통학 편의 지원) ---- 농산어촌----------.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찾아오는 농어촌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농산어촌학교---------- 각급 학교와 유학생에게 행정적·재정적 ----------.
②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주체별로 다양한 연수 및 연찬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농산어촌학교----------.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95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구강건강 진료비”란 구강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생 구강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1년 내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9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의회”란 학생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회, 학생의회, 교육지원청, 전라북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이 자치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의회의 기능)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2. 입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3.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4.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제안
5. 학생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제5조(학생의회의 구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회를 매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학생의회 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의원은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학생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의원의 역할) ① 학생의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생의회에 제안한다.

② 학생의원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생의회에 참여한다.

제7조(학생의원 임기 및 사임) ①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학생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임서를 제출한 학생의원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퇴한다.

④ 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 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원 중에서 학생의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출석의원 최다득표로 당선된다.

③ 의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학생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학생의회 의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 ①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학생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2. 각종 연수, 현장학습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 반영) 교육감은 학생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97호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의 위치란을 ‘전북 정읍시 충정로 93’에서 ‘전북 정읍시 충정로 276’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전라북도교육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 주 시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전북 군산시 조촌로 22	군 산 시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전북 익산시 중앙로 127	익 산 시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전북 정읍시 충정로 276	정 읍 시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전북 남원시 남문로 373	남 원 시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전북 김제시 요촌북로 70	김 제 시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완 주 군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47	진 안 군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5길 22	무 주 군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50	장 수 군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임 실 군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83	순 창 군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고 창 군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전북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3	부 안 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제2조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제2조 관련)

현 행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전북 정읍시 충정로 93	정 읍 시

개 정 안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전북 정읍시 충정로 276	정 읍 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98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제6조 중 “교육국 및 행정국”을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기획조정, 평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정보교육, 방과후, 전산에 관한 사항
3. 안전, 중대재해,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학교회계, 사학에 관한 사항
5.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7조제3호의 “혁신학교,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학사”를 “학사”로 하고, 제5호의 “과학·영재·정보교육의 기획, 전산에 관한 사항”을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3호의 “예산, 학교회계, 법무”를 “법무”로 한다.
제3장제2절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개발·보급”을 “개발·보급·지원”으로 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하며, 제2항의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13조의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14조제6호를 7호로 하고,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4장제5절 “수련시설”을 “교육지원시설”로 하며, 제32조제1항의 “심신 단련과 호연

지기를 기르며,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교직원 및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청 소속 야영수련 및 체험학습 시설로 종합학습원과 간이야영장을 둘 수 있다.”를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교육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2항의 “수련시설”을 “교육지원시설”로 한다.

제33조의 “수련시설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한다.”를 “교육지원시설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는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 3.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교육감) ①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교안전, 자치단체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3. 삭제	제5조(부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제6조(국의 설치)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6조(국의 설치) ----------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신 설>	제6조의2(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기획조정, 평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정보교육, 방과후, 전산에 관한 사항 3. 안전, 중대재해,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학교회계, 사학에 관한 사항 5.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7조(교육국) (생략)	제7조(교육국)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혁신학교,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학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 학사,----------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진로·직업교육, 진학·상담, 창의인재육성, 과학·영재·정보교육의 기획, 전산에 관한 사항	5. ----------,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국) (생략)	제8조(행정국)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예산, 학교회계, 법무에 관한 사항	3. 법무에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제2절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제12조(설치) ①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교육정보·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설치) ①----------개발·보급·지원----------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하 "미래교육연구원"이라 한다)----------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에 둔다.	② 미래교육연구원----------
제13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원장) 미래교육연구원----------
제14조(업무) (생략) 1. ~ 5. (생략) <신 설> 6. (생략)	제14조(업무)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제5절 그 밖의 수련시설	제5절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유치원,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 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교직원 및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청 소속 야영수련 및 체험학습 시설로 종합학습원과 간이야영장을 둘 수 있다.	제32조(설치) ① ----------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교육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교육지원시설의 ----------
제33조(관리자) 그 밖의 수련시설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한다.	제33조(관리자) ---------교육지원시설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는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199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및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40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4,065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2.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9명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335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4,409				
정무직계	**1**		**1**		
교육감	1		1		
특정직(교육전문직)계	**335**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이상)	**37**		22	15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8**				
일반직계	**4,054**				
3급	4		4		
3·4급	2		2		
4급	23	1	21	1	
5급 이하 소계	**4,013**				
전문경력관 소계	12				
연구직계	**15**				
연구사 소계	15				
별정직계	**4**				
5급상당 이하 소계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43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4,409명** ----------.
1.전라북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4,091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 ---------- **4,065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333명	3. ---------- **335명**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4,433**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특정직 계	**333**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 상당 이상)	**35**		20	15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8**				
일반직 계	**4,080**				
3급	**3**		3		
3·4급	**2**		2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4,044**				
전문경력관 소계	**12**				
연구직 계	**15**				
연구사 소계	15				
별정직 계	**4**				
5급상당 이하 소계	4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4,409**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특정직 계	**335**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 상당 이상)	**37**		22	15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8**				
일반직 계	**4,054**				
3급	**4**		4		
3·4급	**2**		2		
4급	**23**	1	21	1	
5급 이하 소계	**4,013**				
전문경력관 소계	**12**				
연구직 계	**15**				
연구사 소계	15				
별정직 계	**4**				
5급상당 이하 소계	4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200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군산시의 명칭란 중 “군산상업고등학교”를 “군산상일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명 칭	위 치	적 용 일	비 고
군산상일고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석치1길 17	2023. 3. 1.	교명변경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고등학교	(별표 5) 고등학교

시군명	명 칭	위 치
군산시	**군산상업고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석치1길 17

시군명	명 칭	위 치
군산시	**군산상일고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석치1길 17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201호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적 참여·소통함으로써 교육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교육 협력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회”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부모회를 말한다.
2. “시·군 학부모회협의회”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지역별 각급학교 학부모회 대표가 연대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이하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라 한다)”란 제2호의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학부모회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군 및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 학부모회 구성 여부 파악 및 각급학교 학부모회 구성 비율이 3분의2 이상일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구성을 위한 홍보 및 소집
2. 제1호에 따른 시·군 학부모협의회가 구성된 후, 전북 학부모회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에 홍보 및 안내 실시 등
3. 그 밖에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가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원활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학부모회 의견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2. 교육정책에 관한 학부모 의견 청취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의 교육감과 함께하는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개최
3. 제1호 및 제2호의 협의회 종료 후 14일 이내,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협의회 결과 알림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및 감사 등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상반기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고, 선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투표 및 온라인 투표 등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및 감사 등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상반기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고, 선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등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임기·직무·자격)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당해 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대표는 학부모회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학부모회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의무)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권침해 등의 학교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학교와의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기능)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
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교육
3. 각 학교 학부모회 의견 취합·검토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5. 그 밖에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지원
2. 시·군 협의회 의견 취합·검토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3. 전북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교육
4. 교육기관과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5. 그 밖에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11. 2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조례 제5202호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학교의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녹색어머니연합회”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설치)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명칭) 연합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기능) 연합회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교통안전 및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계몽운동의 전개
3.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개선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5. 학생 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6.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학교 연합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연합회의 임원은 해당 연합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직무・자격) 임원의 임기와 연임, 직무와 자격은 연합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 조직) 연합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연합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연합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 활동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 규칙 제3202호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를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를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로, “별도”를 “별도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받고자하는”을 “받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거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50억원까지”를 “50억원까지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은”을 “입었거나, 농어가 경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2%”를 “2퍼센트”로, “1%”를 “1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40세”를 “18세 이상 45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를 “1퍼센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되며, 위원은 예산과장과 농수산분야 관련 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위원은 예산과장과 농수산분야 관련 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 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2조의4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두차례”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2022-298호

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2월 9일

1. 사 업 명 : 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93ha
5. 사업개요 : 평야부 24조 9,051m
   - 용수로 : 5조 L=6,697m
   - 배수로 : 19조 L=2,354m
6. 사업기간 : 2022. 12월 ~ 2023. 12월
7. 총사업비 : 2,418백만원
8.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 고창군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고창군 건설도시과 (전화:063-560-2555)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2-299호

창평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안)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천동리, 천서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창평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2월 9일

1. 사 업 명 : 창평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천동리, 천서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112ha
5. 사업개요 : 용수로 16조 5,776m, 배수로 10조 2,433m
6. 사업기간 : 2022.12월 ~ 2023.12월
7. 총사업비 : 2,912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전화 063-860-008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2-300호

내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내광리, 대송리, 도장동 일원에 시행 예정인 내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2월 9일

1. 사 업 명 : 내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내광리, 대송리, 도장동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170ha
5. 사업개요 : 용수로 20조 6,931m, 배수로 11조 3,579m
6. 사업기간 : 2022.12월 ~ 2023.12월
7. 총사업비 : 4,420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전화 063-540-117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2-301호

망산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평교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망산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2월 9일

1. 사 업 명 : 망산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평교리 일원
3. 사업목적 : 용·배수로 시설 현대화를 현대화를 통한 영농환경개선,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공급을 통한 통업생산량 증대 효과 등
4. 구역면적 : 76ha
5. 사업개요 : 용수로 14조 3,665m, 배수로 11조 2,474km 등
6. 사업기간 : 2022.12월 ~ 2023.12월
7. 총사업비 : 1,976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화 063-580-105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2-305호

금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금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2월 9일

1. 사 업 명 : 금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남원시 보절면, 사매면, 내척동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27.7ha
5. 사업개요
   ○ 수 원 공 : 저수지 정비
      - 저수지 5개소
   ○ 부대공사 : 가설사무소, 시험비, 중기운반 등
6. 사업기간 : 2022. 11. ~ 2025. 12.
7. 총사업비 : 3,926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전화063-620-207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보절면 금다리	산83-10	임	16317.0	728.0	방진기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266				
2	보절면 금다리	892	도	3603.0	208.5	국(건설부)					
3	보절면 금다리	419-1	유	797.0	760.2	백천형수					
4	보절면 금다리	419-2	답	2575.0	19.6	백경현	366				
5	보절면 금다리	150	유	106.0	106.0	백태석	302				
6	보절면 금다리	산131-5	임	1686.0	88.8	우광룡	366				
7	보절면 금다리	산131-7	임	397.0	125.0	우광룡	366				
8	보절면 금다리	산131-2	임	6599.0	497.1	우광룡	366				
9	사매면 대신리	산124-2	임	736.0	34.7	윤성재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8 대명구름채아파트 206-1104				
10	사매면 대신리	530-1	답	1107.0	174.4	최은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68 106동 402호 (사직동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	사매면 대신리	842	구	3030.1	575.1	국(농림수산부)					
12	사매면 대신리	841	도	4558.8	28.9	국(농림수산부)					
13	사매면 대신리	529	유	758.0	758.0	이일기					
14	사매면 대신리	530-2	전	635.0	635.0	최은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68 106동 402호 (사직동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5	사매면 대신리	669	구	742.0	577.1	국(농림축산식품부)					
16	사매면 대신리	522-2	유	783.0	783.0	이석룡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사매면 대신리	525	유	1702.0	1702.0	이석형					
18	사매면 대신리	524-1	임	807.0	241.8	이하수	59				
19	사매면 대신리	526	답	967.0	178.5	이석린	61				
20	사매면 대신리	528	유	450.0	450.0	이일기					
21	사매면 대신리	산123-1	구	496.0	293.7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22	사매면 대신리	526-1	구	231.0	6.9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23	사매면 대신리	산21	임	57064.0	462.1	전주이씨용산공파종중	493				
24	사매면 대신리	산22	임	7140.0	519.0	이성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59-12 우성신성타운 101-707				
25	사매면 대신리	산23	임	68361.0	2209.5	전주이씨영해군파덕촌종중	86				
26	사매면 대신리	6-2	답	992.0	97.5	남원시					
27	사매면 대신리	8	유	318.0	318.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8	사매면 대신리	9	유	497.0	497.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9	사매면 대신리	857	구	4967.9	336.2	국(농림수산부)					
30	사매면 대신리	647	도	663.0	472.8	국(건설부)					
31	사매면 대신리	648-2	구	1486.0	1078.0	국(농수산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2	사매면 대신리	7	유	317.0	213.7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3	사매면 대신리	산31	임	21128.0	1783.9	전주이씨지평공파종중	350				
34	내척동	434-1	유	3821.0	382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	내척동	433-1	유	205.0	205.0	소재기	521				
36	내척동	682	구	62954.0	681.7	국(농림축산식품부)					
37	내척동	산29-2	임	27570.0	271.3	소기옥	남원읍내척리529				
38	내척동	산30	임	11405.0	775.1	차명득	전주시 교동2가 87-7				
39	내척동	산13-18	임	9390.0	528.9	김동섭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446				
40	사매면 인화리	산15	임	298.0	13.6	문영선	전남 동광양시 금호동 724 장미아파트 1-302				
41	사매면 인화리	165-1	유	694.0	69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2	사매면 인화리	166-1	유	2578.0	2303.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3	사매면 인화리	708	구	2904.8	257.1	국(농림축산식품부)					
44	사매면 인화리	166-3	전	93.0	9.1	서정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41-12				
45	사매면 인화리	166-2	전	797.0	148.7	서정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41-12				

전라북도 고시 제2022-307호

군산2국가산업단지 휴스틸 진출입로 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군산2국가산업단지 휴스틸 부지 진출입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2년 12월 9일

Ⅰ. 개발계획(변경없음)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군산2국가산업단지 휴스틸 부지 진출입로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시행자 : 주식회사 휴스틸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6-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의 목적

-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주식회사 휴스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설치

○ 사업의 개요(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50,458,513	50,458,513	-	100	
육 지	15,773,513	15,773,513	-	31.26	
전용공업용지	9,373,364.2	9,373,364.2	-	18.58	
공장용지	7,077,875.9	7,077,875.9	-	14.03	
폐기물처리장	336,016.5	336,016.5	-	0.67	
발전소	330,612.6	330,612.6	-	0.66	
항만시설 보호지구	1,525,758.0	1,525,758.0	-	3.02	
열병합발전소	99,100.9	99,100.9	-	0.20	
변전소	4,000.3	4,000.3	-	0.01	
일반공업용지	1,083,006.9	1,083,006.9	-	2.15	
공장용지	1,083,006.9	1,083,006.9	-	2.15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준공업용지	561,740.8	561,740.8	-	1.11	
임해업무단지	260,489.9	260,489.9	-	0.52	
유통기지	37,966.7	37,966.7	-	0.08	
공공지원시설	102,590.1	102,590.1	-	0.20	
생산지원시설	150,694.1	150,694.1	-	0.30	
후생복지시설	10,000.0	10,000.0	-	0.02	
상업용지	173,366.9	173,366.9	-	0.34	
주거용지	429,721.4	429,721.4	-	0.85	
공동주택용지	197,522.5	197,522.5	-	0.39	
단독주택용지	228,652.4	228,652.4	-	0.45	
근린생활시설용지	3,546.5	3,546.5	-	0.01	
기타공공시설용지	4,152,312.8	4,152,312.8	증·감없음	8.23	
도로	1,708,064.1	1,708,939.9	(증)875.8	3.39	도로신설
공원	1,274,758.9	1,274,758.9	-	2.53	
녹지	310,319.6	309,443.8	(감)875.8	0.61	녹지→도로
유수지	518,429.9	518,429.9	-	1.03	
학교	73,039.8	73,039.8	-	0.14	
기타	267,700.5	267,700.5	-	0.53	
호안	46,028.5	46,028.5	-	0.09	
배수지	43,918.7	43,918.7	-	0.09	
공공공지	32,548.8	32,548.8	-	0.06	
우수펌프장	17,024.6	17,024.6	-	0.03	
폐수종말처리장	98,239.0	98,239.0	-	0.19	
생활용수가압장	371.0	371.0	-	0.00	
주차장	10,497.3	10,497.3	-	0.02	
종교시설	3,086.3	3,086.3	-	0.01	
공공청사	5,967.8	5,967.8	-	0.01	
통신시설	1,399.3	1,399.3	-	0.0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619.2	8,619.2	-	0.02	
해 면 (공유수면)	34,685,000.0	34,685,000.0		68.74	

-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 철도, 항만계획 : 도로계획 변경

▪ 도로계획

구분	규 모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52	14	30	비응도동 광로3-1	비응도동 36-19	
신설	중로	3	153	14	30	비응도동 광로3-1	비응도동 36-19	

2) 용수, 하수, 배수시설계획 : 변경없음

3) 공원, 녹지계획 : 녹지계획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임항부지와 발전소를 잇는 철도변	76,673.6	감 875.8	75,797.8	녹지→도로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 : 변경없음
5) 통신시설계획 : 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없음
7) 유통업무설비지구 : 변경없음
8) 항만시설보호지구 : 변경없음
9) 공공공지계획 : 변경없음
10) 공공청사계획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4번지 일원

나. 면 적

○ 산단면적 : 50,458,513㎡(변경없음)

○ 금회 사업면적 : 875.8㎡

- 진출입로 개설 2개 노선 875.8㎡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 시행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

○ 시행기간 : 실시계획 변경승인일로부터 ~ 2023.5.31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0,458,513	-	50,458,513	100.0	
육지	합 계		15,773,513	-	15,773,513	31.3	
	주거지역	소 계	772,258	-	772,258	1.6	
		제2종일반주거지역	496,304	-	496,304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275,954	-	275,954	0.6	
	상업지역	소 계	360,372	-	360,372	0.7	
		일반상업지역	360,372	-	360,372	0.7	
	공업지역	소 계	12,549,480	-	12,549,480	24.9	
		전용공업지역	10,627,901	-	10,627,901	21.1	
		일반공업지역	1,214,780	-	1,214,780	2.4	
		준공업지역	706,799	-	706,799	1.4	
	녹지지역	소 계	2,091,403	-	2,091,403	4.1	
		자연녹지지역	2,091,403	-	2,091,403	4.1	
미 지 정 (해 면)			34,685,000	-	34,685,000	68.7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 장 (m)			면 적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6,760	증) 28.0	76,788	1,714,759	증)875.8	1,715,634.8	
광로 소계				8,545		8,545	399,950		399,950	
기정	광로	2	50~60	5,740	-	5,740	287,750.0	-	287,750.0	
기정	광로	3	40	2,805	-	2,805	112,200.0	-	112,200.0	
대로 소계				21,117		21,117	632,025		632,025	
기정	대로	1	35	7,301	-	7,301	255,535.0	-	255,535.0	
기정	대로	2	30	6,068	-	6,068	182,040.0	-	182,040.0	
기정	대로	3	25	7,748	-	7,748	194,450.0	-	194,450.0	
중로 소계				34,509		34,537	582,156		583,031.8	
기정	중로	1	20	13,630	-	13,630	272,600.0	-	272,600.0	
기정	중로	2	15~17	13,950	-	13,950	215,510.0	-	215,510.0	
변경	중로	3	12~14	6,929	증) 28.0	6,957	94,046	증)875.8	94,921.8	
소로 소계				12,589		12,589	100,628		100,628	
기정	소로	1	11	137	-	137	1,532.0	-	1,532.0	
기정	소로	2	8	12,177	-	12,177	97,416.0	-	97,416.0	
기정	소로	3	6~7	275	-	275	1,680.0	-	1,680.0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76,788						
기정	광로	2	2	50	주간선	2,865	광로2-6종점	비응항	일반		건고37 (76.3.27)	
기정	광로	2	6	50	주간선	2,250	13호 공원	광로2-4시점	일반		건고37 (76.3.27)	
기정	광로	2	7	50	주간선	535	광로2-6	광로2-5시점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광로	2	8	60	주간선	30	광로3-1	공장용지	일반			
기정	광로	2	9	55	주간선	30	광로3-1	공장용지	일반			
기정	광로	2	10	60	주간선	30	광로3-1	공장용지	일반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	2,805	광로2-4	대로1-4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1	17	35	주간선	2,763	대로1-15	대로1-22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1	20	35	주간선	903	대로2-16	대로1-16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1	21	35	주간선	2,367	광로3-1	대로2-16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1	22	35	주간선	1,268	대로1-17	비응도동 4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2	12	30	보조간선	635	대로3-23	중로1-42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2	13	30	보조간선	162	대로1-17	대로2-17	일반		건고80 (94.3.1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5	30	보조간선	620	대로2-16	대로3-23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2	16	30	보조간선	922	광로2-6	대로2-15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2	17	30	보조간선	395	중로1-41	중로1-42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2	18	30	보조간선	631	대로1-21	대로3-21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2	19	30	보조간선	1,023	광로2-4	대로1-21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2	20	30	보조간선	1,024	광로3-1	소로2-494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2	21	30	보조간선	656	대로3-18	대로2-20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3	16	25	보조간선	954	광로2-4	대로1-21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대로	3	17	25	보조간선	496	대로3-23	군산국가산단지구계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대로	3	18	25	보조간선	773	대로2-21	중로1-56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대로	3	20	25	보조간선	764	광로3-1	대로2-21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3	21	25	보조간선	1,831	광로3-1	대로3-23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3	22	25	보조간선	631	대로1-21	대로3-23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3	23	25	보조간선	1,248	대로3-29	군산국가산단지구계	일반		건고80(94.3.18)	
기정	대로	3	26	25	보조간선	1,051	대로1-17	대로3-21	일반		건고80(94.3.18)	
기정	중로	1	37	20	집산도로	401	대로2-12	대로3-17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38	20	집산도로	309	대로3-23	중로1-37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39	20	집산도로	641	대로3-23	중로1-42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40	20	집산도로	641	대로3-23	중로1-42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41	20	집산도로	570	대로2-17	중로1-68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42	20	집산도로	882	군산국가산단지구계 대로3-25	오식도공원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43	20	집산도로	520	대로2-12	중로1-39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44	20	집산도로	317	대로2-15	중로1-31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45	20	집산도로	1,282	대로2-16	중로1-46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46	20	집산도로	631	광로2-6	중로1-34	일반		건고80(94.3.18)	
기정	중로	1	47	20	집산도로	459	대로1-20	중로1-45	일반		건고80(94.3.18)	
기정	중로	1	48	20	집산도로	518	대로2-16	대로3-16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49	20	집산도로	406	광로2-6	중로1-45	일반		건고80(94.3.18)	
기정	중로	1	50	20	집산도로	631	대로2-21	대로3-21	일반		건고742(91.12.5)	
기정	중로	1	51	20	집산도로	985	광로2-4	대로1-21	일반		건고80(94.3.18)	
기정	중로	1	52	20	집산도로	645	대로2-19	중로1-51	일반		건고80(94.3.18)	
기정	중로	1	53	20	집산도로	505	대로3-16	중로1-51	일반		건고80(94.3.1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4	20	집산도로	629	광로3-1	대로2-19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649	대로2-20	대로3-20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1,076	중로2-107	대로3-18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7	20	집산도로	137	대로1-17	중로1-41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68	20	집산도로	398	중로1-42	중로1-4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1	69	20	집산도로	398	중로1-42	중로1-4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42	15	집산도로	56	오식도동 765도	오식도동 771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3	15	집산도로	461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90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4	15	집산도로	568	오식도동 768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5	15	집산도로	553	오식도동 708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6	15	집산도로	591	오식도동 764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7	15	집산도로	500	오식도동 765도	오식도동 70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8	15	집산도로	500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38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9	15	집산도로	458	대로1-20	중로1-45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0	15	집산도로	458	대로1-20	중로1-45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1	15	집산도로	458	대로1-20	중로1-45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2	17	집산도로	472	대로3-26	중로3-38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3	17	집산도로	492	대로3-26	중로3-38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4	17	집산도로	492	대로3-26	중로3-38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5	17	집산도로	788	대로3-26	오식도동 514-6장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91	17	집산도로	409	중로2-55	중로2-92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2	17	집산도로	477	대로3-26	중로3-37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3	15	집산도로	303	광로2-6	대로2-16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4	15	집산도로	143	중로2-93	중로2-95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5	15	집산도로	97	대로2-16	중로2-93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6	15	집산도로	262	대로2-16	중로2-99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7	15	집산도로	150	중로2-96	중로2-99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8	15	집산도로	40	광로2-4	중로2-99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9	15	집산도로	517	대로2-16	대로3-16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0	15	집산도로	405	대로3-16	중로2-96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1	15	집산도로	103	광로2-4	중로2-100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2	15	집산도로	506	대로3-16	중로1-5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3	15	집산도로	506	대로3-16	중로1-5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4	15	집산도로	103	광로2-4	중로2-102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5	15	집산도로	645	대로2-18	중로1-50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6	15	집산도로	629	광로3-1	대로2-18	일반		'01.12.2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07	15	집산도로	500	중로1-56	남방파제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35	15	집산도로	1,308	대로2-1 (비응관광지)	비응도공원	일반		'10.05.20	
기정	중로	3	35	12	집산도로	341	중로1-48	중로2-100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6	12	집산도로	372	중로1-53	중로2-102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7	14	집산도로	480	중로2-92	중로2-55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8	14	집산도로	651	중로2-53	중로2-54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9	14	집산도로	308	중로1-44	대로3-23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0	14	집산도로	459	중로1-45	대로1-20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1	14	집산도로	517	대로3-22	대로2-15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2	14	집산도로	501	대로1-21	중로3-41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3	14	집산도로	252	대로3-22	중로3-42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4	14	집산도로	252	중로3-42	대로2-15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5	14	집산도로	629	광로3-1	대로2-18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63	14	집산도로	482	중로1-55	광로3-1	일반		익산청86 (07.5.9)	
기정	중로	3	64	14	집산도로	465.7	대로1-21	중로1-48	일반		익산청73 (08.3.12)	
기정	중로	3	65	14	집산도로	647.3	중로1-49	중로1-46	일반		익산청73 (08.3.12)	
기정	중로	3	66	12	집산도로	135	소로2-493	대로2-17	일반		익산청190 (11.8.16)	
기정	중로	3	67	12	집산도로	135	소로2-493	대로2-17	일반		익산청190 (11.8.16)	
기정	중로	3	68	12	집산도로	270	중로1-39	대로2-17	일반		익산청 '13.7.2	
신설	**중로**	**3**	**152**	**14**	**국지도로**	**30**	**비응도동 광로3-1**	**비응도동 36-19**	**일반**		**금회**	
신설	**중로**	**3**	**153**	**14**	**국지도로**	**30**	**비응도동 광로3-1**	**비응도동 36-19**	**일반**		**금회**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90	대로3-21	중로3-1	일반		익산청 '13.7.2	
기정	소로	1	2	11	국지도로	47	중로3-1	공공지원시설	일반		익산청 '13.7.2	
기정	소로	2	398	8	국지도로	492	대로3-21	오식공원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399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4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0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1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2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3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4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5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7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8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09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0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1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2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3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4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4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5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08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6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07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7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07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8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07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9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35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420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3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1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3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2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3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3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38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4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40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5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7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28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29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0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1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38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32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40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3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40도	오식도동 749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4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41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35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41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3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41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7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8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9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0	8	국지도로	209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4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1	8	국지도로	65	오식도동 768도	오식도동 770도	일반		건고91 (68.7.22)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42	8	국지도로	114	오식도동 769도	오식도동 771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43	8	국지도로	312	오식도동 770도	오식도동 77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4	8	국지도로	65	오식도동 771도	오식도동 770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5	8	국지도로	114	오식도동 771도	오식도동 774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6	8	국지도로	65	오식도동 773도	오식도동 77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7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80도	오식도동 778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8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77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9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77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0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77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1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2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3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54	8	국지도로	209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8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55	8	국지도로	102	오식도동 780도	오식도동 787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5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81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7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81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8	8	국지도로	148	오식도동 775도	오식도동 79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9	8	국지도로	132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8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60	8	국지도로	164	오식도동 775도	오식도동 79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61	8	국지도로	51	오식도동 788도	오식도동 789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2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63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64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5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66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80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7	8	국지도로	312	오식도동 790도	오식도동 78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8	8	도로	30	오식도동 766도	오식도동 802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9	8	도로	30	오식도동 737도	오식도동 739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70	8	도로	30	오식도동 764도	오식도동 763도	보행자 전용		'91.12.7	
기정	소로	2	471	8	도로	30	오식도동 766도	오식도동 803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72	8	도로	30	오식도동 766도	오식도동 702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73	8	도로	29	오식도동 790도	오식도동 789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5 (78.5.22)	
기정	소로	2	493	8	국지도로	639	대로1-17	중로1-42	일반		'98.6.30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94	8	국지도로	942	대로2-20	소로2-495	일반		'01.12.28	
기정	소로	2	495	8	국지도로	1008	중로1-56	소로2-494	일반		'01.12.28	
기정	소로	2	496	8	국지도로	100	중로3-37	오식도동 503공	일반		'01.12.28	
기정	소로	2	762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08도 중로2-45	오식도동 709도 공공공지1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3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32도 중로2-45	오식도동 733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4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49도 중로2-45	오식도동 750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5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60도 중로2-45	오식도동 761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6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68도 중로2-44	오식도동 767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7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73도 중로2-44	오식도동 772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8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78도 중로2-44	오식도동 777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9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94도	오식도동 793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979	8	국지도로	30	광로3-1	공장용지	공장진입		군산고55 (13.4.26)	
기정	소로	3	485	6	국지도로	100	대로3-21	중로2-55	보행자전용		군산고55 (13.4.26)	
기정	소로	3	486	6	국지도로	145	광로3-1	중로3-38	보행자전용		'01.12.28	
기정	소로	3	735	7	국지도로	30	광로1-1	소방서	일반로		'01.12.28	

▪ 내초도의 지구외 연결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3	50	주간선	119	광로2-2	군산국가산단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94.3.1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중로3-152	폭원 14m, 연장 30m	입주기업(주식회사 휴스틸) 생산활동에 필요한 진출입로 개설
신설	-	중로3-153	폭원 14m, 연장 30m	입주기업(주식회사 휴스틸) 생산활동에 필요한 진출입로 개설

2) 공원(변경없음)

▪ 공원 총괄표

구분	구 분	행 정 구 역(㎢)					시 가 화 구 역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 적	개소,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6	1.32	-	5	1.32	16	1.32	-	16	1.32	
기정	근린공원	10	1.29	-	10	1.29	10	1.29	-	10	1.29	
기정	어린이공원	5	0.01	-	5	0.01	5	0.01	-	5	0.01	
기정	묘지공원	1	0.02	-	1	0.02	1	0.02	-	1	0.02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23,751.9	-	1,323,751.9		
기정	1	비응도공원	근린공원	지구남측 비응도 서측	179,640.9	-	179,640.9	'91.12.7	
기정	2	가도공원	근린공원	남측중앙부 광로 2-2호선변	142,313.0	-	142,313.0	'91.12.7	
기정	4	오식공원	근린공원	지구중앙부 오식도내	480,030.0	-	480,030.0	'91.12.7	
기정	6	내초공원	근린공원	지구동측 내초도 남측	143,816.3	-	143,816.3	'91.12.7	
기정	7	오식묘지공원	묘지공원	지구 중앙부 오식도내	20,000.3	-	20,000.3	'94.3.18	
기정	9	분말공원	근린공원	오식도동700공	103,590.9	-	103,590.9	'91.12.7	
기정	10	중앙1호공원	근린공원	자유무역지역남측 대로3-4호선변	18,897.9	-	18,897.9	'02.1.3	
기정	11	중앙2호공원	근린공원	지구중앙부 대로 2-7호선변	16,926.2	-	16,926.2	'02.1.3	
기정	23	요죽공원	근린공원	오식도동661공	51,596.6	-	51,596.6	'91.12.7	
기정	24	생말공원	근린공원	지구동측 생말 일원	108,650.4	-	108,650.4	'91.12.7	
기정	31	새만금비응공원	근린공원	새만금방조제입구, 광로2-4호변	48,993.0	-	48,993.0	'10.05.20	
기정	48	제1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오식도동805-2공	2,008.8	-	2,008.8	'91.12.7	
기정	49	제2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오식도동806-4공	1,999.6	-	1,999.6	'91.12.7	
기정	50	제3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오식도동615-2공, 615-3대	1,821.8	-	1,821.8	'91.12.7	
기정	51	제4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오식도동634-5공	1,619.8	-	1,619.8	'91.12.7	
기정	52	제5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오식도동677-4공, 677-3대	1,846.4	-	1,846.4	'91.12.7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2,435.9	감 875.8	261,560.1		
변경	**1**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임항부지와 발전소를 잇는 철도변**	**76,673.6**	**감 875.8**	**75,797.8**	'91.12.7	
기정	2	호안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서측호안변	31,679.4	-	31,679.4	'91.12.7	
기정	3	유수지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유수지변	53,102.1	-	53,102.1	'91.12.7	
기정	6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호선변	28,419.3	-	28,419.3	'91.12.7	
기정	7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로 1-42호선변	2,787.1	-	2,787.1	'98.7.6	
기정	9	오식도 완충녹지	완충녹지	오식도 북동측	8,379.2	-	8,379.2	'02.1.3	
기정	10	폐수처리장 완충녹지	완충녹지	폐수처리장 주변	10,387.9	-	10,387.9	'03.8.21	
기정	30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오식도동 805-1잡, 806-1잡	22,579.5	-	22,579.5	'91.12.7	
기정	31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오식도동 652-2잡, ,653잡, 654잡, 655잡, 695접, 696잡, 697잡, 698잡, 699잡	28,427.8	-	28,427.8	'91.12.7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녹지명	변경후 녹지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철도변 완충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면적감소 (감 875.8㎡) (76,673.6㎡ → 75,797.8㎡)	입주기업(주식회사 휴스틸) 생산활동에 필요한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감소

4) 배수지시설(변경없음)

▪ 배수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4,289.7	-	44,289.7		
기정	1	생활용수 가압장	중로1-4호선변진입로입구 남측	371	-	371	'98.7.6	
기정	4	배수지	오식도동701수,736도	43,918.7	-	43,918.7	'91.12.7	

5)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하수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5,263.6	-	115,263.6		
기정	1	폐수종말처리장	비응도북측,유수지동측	98,239.0	-	98,239.0	'91.12.7	
기정	2	우수펌프장	유수지 남측	17,024.6	-	17,024.6	'91.12.7	

6) 유수지시설(변경없음)

▪ 유수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대로3-4호선 종점부에서 지구서측 비응도	518,429.9	-	518,429.9	'91.12.7	

7)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유수지 동측 및 발전소 북측	336,016.5	-	336,016.5	'91.12.7	

8) 철도시설(변경없음)

▪ 철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경과지				
계							7,114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군산국가산단 철도연결부	공장용지		3,865	-	'91.12.7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군산지구 철-2	지구남측 구역계		3,249	-	'91.12.7	

9) 항만시설(변경없음)

▪ 항만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호안	호안	북서측 구역계~비응도	2,557	-	2,557	'91.12.7	

10) 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없음)

▪ 유통업무설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통업무 설비시설	자유무역지역내 대3-9호선 좌측	37,966.7	-	37,966.7	'91.12.7	

11) 에너지공급시설(변경없음)

▪ 에너지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48,457.9	-	448,457.9		
기정	1	발전소	지구서측 비응도공원동측	330,613	-	330,613	'91.12.7	
기정	2	열병합발전소	대로1-3호선변 발전소북측	99,100.9	-	99,100.9	'91.12.7	
기정	3	변전소	광로3-1호선변 중간부	4,000	-	4,000	'02.1.3	
기정	5	풍력발전기	서측호안변 완충녹지(녹-2)	720	-	720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기정	17	풍력발전시설	비응도동 21번지	14,024	-	14,024		

12)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3,039.8		73,039.8		
기정	1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 615-1대	600.7	-	600.7	'91.12.7	
기정	2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 634-6대	599.9	-	599.9	'91.12.7	
기정	3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 677-5대	601.0	-	601.0	'91.12.7	
기정	8	학교	중학교	오식도동 641학	14,834.6	-	14,834.6	'91.12.7	
기정	24	학교	고등학교	오식도동 631학	15,185.8	-	15,185.8	'91.12.7	
기정	29	학교	초등학교	오식도동 805-5학	12,003.6	-	12,003.6	'91.12.7	
기정	30	학교	초등학교	오식도동 694학	12,273.2	-	12,273.2	'91.12.7	
기정	31	학교	대학교	오식도동 515-4번지	4,477.0		4,477.0	'13.7.2	
기정	32	학교	대학교	오식도동 515-4번지	8,737.0		8,737.0	'13.7.2	
기정	33	학교	대학교	오식도동 515번지	3,727.0		3,727.0	'13.7.2	

13) 연구시설(변경없음)

▪ 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727.0	-	3,727.0		
기정	1	연구시설	오식도동 515	3,727.0	-	3,727.0	'13.7.2	

14)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967.8	-	5,967.8		
기정	4	공공청사	소방서	광로 2-4호선 및 완충녹지변	3,967	-	3,967	국2010-36 '10.05.20	
기정	7	공공청사	공공청사	오식도동 624-11대, 624-12대, 624-13대	2,000.8	-	2,000.8	'91.12.7	

15)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497.3	-	10,497.3		
기정	1	주차장	오식도동 818-5차	1,650.7	-	1,650.7	'01.12.28	
기정	4	주차장	오식도동 891차	1,654.3	-	1,654.3	'01.12.28	
기정	5	주차장	오식도동 909차	1,654.0	-	1,654.0	'01.12.28	
기정	6	주차장	오식도동 943차	1,653.2	-	1,653.2	'01.12.28	
기정	10	주차장	오식도동 620-5잡	1,560.6	-	1,560.6	'91.12.7	
기정	11	주차장	오식도동 671-1잡	1,561.5	-	1,561.5	'91.12.7	
기정	12	주차장	오식도동 515-4번지	763.0	-	763.0	'13.7.2	

16) 통신시설(변경없음)

▪ 통신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99.3	-	1,399.3		
기정	1	통신시설	오식공원내	399.2	-	399.2	'91.12.7	
기정	2	통신시설	오식도동 652-1대	1,000.1	-	1,000.1	'98.7.6	

17)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548.8	-	32,548.8		
기정	1	공공공지	오식도동 709도, 733도, 750도, 761도, 767도, 772도, 777도, 793도	10,175.4	-	10,175.4	'94.3.18	
기정	2	공공공지	오식도동 817-1도, 819-1도	3,035.5	-	3,035.5	'01.12.28	
기정	3	공공공지	오식도동 886도, 914도, 924도, 972도, 981도, 990도, 995도, 1001도, 1006도	19,337.9	-	19,337.9	'04.6.7	

7. 산업단지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전라북도 고시 제2022-309호

택시 감차계획(2개 사업구역)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개 사업구역(전주시, 고창군)에서 수립한 택시감차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 택시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지사

1.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단위 : 대)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전주시	계	120		0		0		0		60		60		468
	법인	120	개인 0	0	0	0	0	0	0	60	0	60	0	미정
고창군	계	24		8		0		6		5		5		50
	법인	17	개인 7	6	2	0	0	5	1	3	2	3	2	미정

2. '22년도 감차 계획

(단위 : 대)

구분	보유대수 (용역기준)	제4차 총량 용역 결과		2022년 감차계획		
		목표대수	과잉대수	계	법인	개인
계	4,008	3,354	654	65	63	2
전주시	3,860	3,272	588	60	60	0
고창군	148	82	66	5	3	2

3. 감차 보상금의 수준

(단위 : 대, 천원)

시군	업종별	감차대수	총소요액	감차보상금액(1대당)			인센티브**
				계	국비*	시군비	
전주시	법인	60	1,770,000	29,500	3,900	15,600	10,000
	개인	0	0	0	0	0	0
고창군	법인	3	99,000	33,000	3,900	19,100	10,000
	개인	2	146,000	73,000	3,900	54,100	15,000

4. 연도별 소요금액 및 감차재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구 분		감차대수	소요금액		감차보상금액 (1대당) (국비+시군비)
	연도별	업종별		감차예산액 (국비+시군비)	인센티브액 (감차재단)	
전주시	2022	법 인	60	1,170,000	600,000	29,500
		개 인	0	0	0	0
고창군	2022	법 인	5	69,000	30,000	33,000
		개 인	3	116,000	30,000	73,000

5. 감차계획 시행기간

시군별	시 행 기 간	비 고
전주시	2020년 ~ 2030년(10년)	
고창군	2020년 ~ 2024년(5년)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1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12. 9.
전 라 북 도 지 사

□ 공 고 사 항

등록번호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된사업	등록일
제2022-1-전라북도-21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군산지부	홍남곤	·사랑의끈연결운동, 생활건강재활치료 등	2022.12.01
제2022-1-전라북도-22호	한국장애인부모회 군산시지부	박성희	·희망나눔주간보호센터운영 등	2022.12.01
제2022-1-전라북도-23호	꿈드래장애인협회군산시지부	김 원	·동거장애인합동결혼식, 일자리사업 등	2022.12.01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1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변경(소재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9.

전 라 북 도 지 사

1. 등록번호 : 제2006-1-전라북도-68호
2. 단 체 명 : 호남호스피스
3.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1길 46
4. 대 표 자 : 박 금 례
5. 주된 사업 :
   ○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전인적인 돌봄사업
   ○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
6. 변경 내용 : 소재지 변경
7. 변경일자 : 2022. 12. 2..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26호

행정심판 재결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부 사유로 송달불능된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2. 공고방법 : 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사항
가. 제 목 : 행정심판 답변서 공시송달
나.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제57조
다. 행정심판 청구건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2022-318	정보부존재결정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부안군수 (자치행정담당관)
2022-319	정보부존재결정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고창군수 (행정지원과)
2022-320	진정질의 통지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순창군수 (행정과)
2022-321	정보부존재결정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임실군수 (행정지원과)
2022-322	정보부존재결정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장수군수 (민원과)
2022-323	정보부존재결정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무주군수 (자치행정과)
2022-324	정보부존재결정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진안군수 (행정지원과)
2022-325	진정질의 통지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완주군수 (행정지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2022-326	정보부존재결정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김제시장 (민원지적과)
2022-327	정보부존재결정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정읍시장 (총무과)
2022-328	정보부존재결정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익산시장 (행정지원과)
2022-329	진정질의 통지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군산시장 (행정지원과)
2022-330	진정질의 통지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덕진구청장 (민원지적과)
2022-331	진정질의 통지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완산구청장 (민원지적과)
2022-332	진정질의 통지 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이양재	전주시장 (총무과)

4. 기타사항

가. 공공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도청 법무행정과(☎063-280-2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31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전 라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지방도 796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칠암 무명1교) 교량 재가설 L=25.0m, B=10.5m (칠암 무명5교) 교량 재가설 L=21.9m, B=10.5m		
도로공사 구간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995번지, 칠암리 234-1번지 일원		
도로공사 시행장소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995번지, 칠암리 234-1번지 일원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22. 12.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2025. 07. 31.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배수개선을 통해 하천재해 예방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33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9.
전 라 북 도 지 사

1. 등록번호 : 제2009-1-전라북도-11호
2. 단체명칭 : 전북인권교육센터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5길 63-5(효자동1가)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전 준 형
   ○ 생 년 월 일 : 1968. 1. 22.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3길 11 903호(서신동)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법률지원 사업 등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박 재 홍	전 준 형	

7. 허가(변경)일자 : 2022. 12. 7.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3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2년 12월 9일

□ 공인의 등록

1. 공인 등록·폐기 사유 : 조직개편 사항 반영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2년 12월 9일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인 영
교통정책과	전라북도교통정책과수입금출납원인	
대변인	전라북도대변인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대변인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대변인수입금출납원인	

등 록 공 인		
미래산업과	전라북도미래산업과일상경비출납원	
〃	전라북도미래산업과수입금출납원인	
〃	전라북도미래산업과수입금출납원인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도로교통과	전라북도도로교통과수입금출납원인	
공보관	전라북도공보관일상경비출납원	
〃	전라북도공보관분임징수관인	

폐 기 공 인		
〃	전라북도공보관수입금출납원인	
혁신성장정책과	전라북도혁신성장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혁신성장정책과수입금출납원인	
〃	전라북도혁신성장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국제협력과	전라북도국제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국제협력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국제협력과수입금출납원인	

폐 기 공 인		
〃	전라북도국제협력과분임물품출납원인	
기획조정실	전라북도기획조정실잼버리지원단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2-183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2년 12월 9일

등 록 번 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 록 일 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65호	주식회사 일리 대표자 정주현	전북 군산시 번영로 253	2022.12.5.

끝.

도 지 사 지 시 사 항

◇ 2022. 12. 2.(금) 15:3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2 -37	'22년 시·군 예산집행률 제고대책 마련	《'22년도 시·군 예산집행 실적(11.30. 기준)》 - 14개 시·군 집행률 : 70.4% * 전국 시·군·구 : 71.5% - 집행률 70%미만 시·군 : 정읍 67.8 / 남원 65 / 진안 67.9 / 장수 66.6 임실 69.2 / 순창 64 / 고창 66 ○ '22년도가 1달이 채 남지 않았으나 일부 시·군의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우려가 되므로 집행률 70%미만시·군 대상으로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고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관 : 예산과 / 협조 :)
	당면·현안업무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법안 통과 대응 철저**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2.7.) 및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 법안 통과 시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등 변경사항에 대한 도민 홍보 및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하여 준비하기 바람. -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도 기업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개정안 통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주관 : 정책기획관, 새만금개발과 / 협조 : 소통기획과)
	당면·현안업무	○ **'23년도 도 본예산 심사 대응 철저** - 내년도 본예산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계수 조정이 완료되고 12월 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중이므로 예산 삭감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설명이 요구됨. - 특히, 국비가 포함된 사업예산 중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으나 매칭 도비를 삭감시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실·국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사업 필요성을 잘 설명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 바람. (주관 : 관련 실·국 / 협조 :)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국정과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중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49회 국무회의 의결(1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11.11.)** **○ 스마트농업 육성 활성화 선도** - 정부는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해 11월 11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청년 스마트팜'의 발전·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청년 스마트팜은 법안과 정부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여건이 열악한 동부권으로 확산·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주관 :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산유통과 / 협조 :)
	당면·현안업무	**《전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 (구성) 2015. 4. 10. ~ / 부기관장급 / 현재까지 총 32회 운영** **- (대상) 18개 기관 : 도, 전주, 완주, 이전공공기관 13, 도 교육청, 도 경찰청** **- (기능)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기적 교류 및 소통창구**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상생발전 협력사업 발굴 검토** - 도에서는 '15년부터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개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해오고 있음. - 실·국에서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바람. (주관 : 지역정책과 / 협조 : 관련 실·국)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12.6.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 (세션1) 새만금 농생명 글로벌 허브 정책 및 국제 컨벤션 인프라 구축 전략 - (세션2) 전북의 국가브랜드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 육성 - (세션3) 지방자치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세계잼버리 이후 레거시 활용방안 **○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 참석 및 정책반영 검토** - 12월 6일 'Now Change, New Jeon-buk'을 주제로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이 개최되므로, - 각 세션별 관련 실·국장 및 과장은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제안·발굴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도 정책과 연계하여 반영·추진할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주관 : 기획조정실 / 협조 : 농생명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전주시 고시 제2022-217호

전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05-106(2005.12.1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주시장
2022년 12월 9일

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4	사회복지시설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477번지 일원	63,017	증)183	63,200	2005.12.14.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4	사회복지시설	· 면적변경 63,017㎡ → 63,200㎡ (증 183㎡)	· 인접한 소규모 잔여부지 편입 · 도시계획시설(소로 1-520호선)에 편입된 부지 제척 · 지적 측량(등록전환측량) 결과 반영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실음 생략 (전주시 도시계획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도시계획과(☎063-281-2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고 제2022-2889호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9호선 외 3개노선)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

전라북도 고시 제1999-45(1999. 4. 2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9호선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전 주 시 장

☐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덕진구 장동 53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9호선 외 3개노선)

○ 명 칭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대로1-19호선 : L=235m, B=38m, A=776㎡

○ 중로3-133호선 : L=68m, B=13m, A=1,019㎡

○ 소로1-555호선 : L=103m, B=10m, A=1,187㎡

○ 소로2-933호선 : L=195m, B=8m, A=1,532㎡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주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4년 4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본번	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소계					8,086	4,514					
1	장동	549	15	대	194	194	이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 50, 109동 1904호(중화산동2가, 현대에코르아파트)	-	-	-
2	장동	549	16	전	191	191	김00 외1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87, 205동 1203호 (장동,전북혁신도시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	-	-	-
3	장동	550	15	답	160	160	강00 외1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77, 103동 904호 (장동,대방디엠시티)	-	-	-
4	장동	550	16	대	171	171	양00 외3인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정송1길 38	-	-	-
5	장동	550	17	도	27	27	강00 외1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77, 103동 904호 (장동,대방디엠시티)	-	-	-
6	장동	550	18	답	46	46	강00 외1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77, 103동 904호 (장동,대방디엠시티)	-	-	-
7	장동	551	5	잡	199	199	이00	전주시 장동 287	-	-	-
8	장동	551	6	창	106	106	김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1720호 (대치동, 선릉역롯데골드로즈2)	-	-	-
9	장동	551	7	창	25	25	김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1720호 (대치동, 선릉역롯데골드로즈2)	-	-	-
10	장동	551	8	답	100	100	황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50, 101동 903호 (평화동1가, 오네뜨아파트)	-	-	-
11	장동	577	15	답	3	3	나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806-2	-	-	-
12	장동	580	5	전	13	13	나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806-2	-	-	-
13	장동	1054	6	대	82	82	불명	불명	-	-	-
14	장동	1010	97	도	1	1	국토교통부	국	-	-	-
15	장동	1022	21	구	56	56	농림축산식품부	국	-	-	-
16	장동	1022	22	구	7	7	농림축산식품부	국	-	-	-
17	장동	1022	23	구	1	1	농림축산식품부	국	-	-	-

18	장동	1024	18	도	8	8	농림축산식품부	국	-	-	-
19	장동	1024	20	도	870	870	농림축산식품부	국	-	-	-
20	장동	1024	21	도	3	3	농림축산식품부	국	-	-	-
21	장동	1025	4	구	10	10	농림축산식품부	국	-	-	-
22	장동	550	19	답	15	15	전주시	공	-	-	-
23	장동	1055		공	199	39	전주시	공	-	-	-
24	장동	1055	1	공	8	8	전주시	공	-	-	-
25	장동	1057	1	도	318	318	전주시	공	-	-	-
26	장동	1059		도	962	36	전주시	공	-	-	-
27	장동	1059	1	도	4,311	1,825	전주시	공	-	-	-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연번	토지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소 유 자		비고
	시	구	동	지번					성명	주소	
1	전주	덕진	장	550-16	컨테이너	6×3×h2.5	2	동	양00 외 3인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정송1길 38	사
							90	㎡			
						7×3.5×h3.8	1	동			
							93.1	㎡			
2	전주	덕진	장	549-16	통신주	2M북2서1	1	주	김00 외 1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87, 205동 1203호(장동, 전북혁신도시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	사
					통신주	불명	1	주			
					한전주	0331D211	1	주			
					통신주	북2서2	1	주			
3	전주	덕진	장	1024-20	통신주	북2서3	1	주	농림축산식품부		국
					한전주	0331D113	1	주			
					통신주	북2서4	1	주			
					통신주	2M북2서5	1	주			
					한전주	0331D111	1	주			
					한전주보조주		1	주			
					통신주	2M북2서6	1	주			
					가로등		2	EA			
					한전주	0331D102	1	주			
					한전보조주		1	주			
					통신주	2M북2서7	1	주			
					통신주	0331Q192 장동선11L4	1	주			
					한전주	0331Q192	1	주			

					통신주	북2선8	1	주			
					통신주	북2선8남1	1	주			
4	전주	덕진	장	551-5	한전주	0331D112	1	주	이00	287	사
					통신주	북2선5동1	1	주			
					컨테이너	(5×2.5)-(0.95×1.4)	1	EA			
							11.2	㎡			
					조립식 건물	(12.05×3.9)+(3.05×1.2)	1	EA			
							50.7	㎡			
					조립식 건물-지붕	(0.6)²+(2.45)²	2.5	㎡			
5	전주	덕진	장	1055	가로등		1	주	전주시		공
6	전주	덕진	장	551-7	컨테이너	6×3×h2.5	1	동	김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1720호 (대치동, 선릉역롯데골드로즈2)	사
							45	㎡			
7	전주	덕진	장	551-8	비닐하우스	12×5.2	62.4	㎡	황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50, 101동 903호(평화동1가, 오네뜨아파트)	사
					비닐하우스	14×5.4	75.6	㎡			
8	전주	덕진	장	1054-6	벚나무	R=15, H=4	1	주	불명	불명	사
					벚나무	R=15, H=5	1	주			
					소나무	R=15, H=1.5	1	주			
9	전주	덕진	장	1059-1	한전주	0331Q191	1	주	전주시		공
					한전주	0331Q181	1	주			
					가로등		5	EA			
					한전주	0331Q082	1	주			
					CCTV		1	EA			
					한전주	0331P982	1	주			
					CCTV		1	EA			
					한전주	0331P881	1	주			
10	전주	덕진	장	1057-1	벚나무	R=3, H=1	1	주	전주시		공
					벚나무	R=5, H=1	2	주			
					벚나무	R=5, H=2	6	주			
					사철나무	R=20, H=2	3	주			
					사철나무	R=15, H=2	3	주			

☐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열람기간 :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전주시 도시계획과(063-281-2537)

○ 열람내용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9호선 외 3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작성 내용

○ 의견서제출 :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장소 또는 우편, 팩스(063-281-2615), 이메일(ohjhc1112@korea.kr)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20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1-91호외 2)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122호(2018.09.21.)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7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1호외 2)사업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7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1호외 2)사업
   나. 명 칭 : 수페리체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가. 중로 1-91호선 도로개설 폭원: 20m, 연장: 175m, 면적: 4,724㎡
   나. 소로 1-379호선 도로개설 폭원: 10～13m, 연장: 140m, 면적: 1,921㎡
   다. 대로 3-28호선 기존도로 정비 연장: 26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빌딩 11층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가. 당초 2018. 09. 21. ~ 2022. 06. 30.
   나. 변경 2018. 09. 21. ~ 2025. 0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7.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토지 및 공공시설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중로1-91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개정면 통사리	179-4	도	66	44	양*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		179-6	도	86	8	양*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		181	도	77	4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개정단위농업협동조합	옥구군 개정면 발산리 113-3	근저당	
4		203-12	도	70	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5		211-1	답	5,355	23	이*희	군산시 개정면				
						이*송	군산시 경암동				
						이*경	군산시 나운동				
						이*	순천시 조례동				
						이*호	옥구군 개정면				
6		211-7	답	398	29	이*송	군산시 경암동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7		212-2	답	438	438	진*광	인천광역시 남구 승학길	조*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근저당	당초
						진*광	인천광역시 남구 승학길	조*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근저당	변경
								메리츠캐피탈(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23층(여의도동)	가압류	
								농협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8		212-4	답	167	160	양*용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80-2				
9		213-1	답	208	208	진경건설	군산시 법원로 17, 2층(조촌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신탁	
10		213-2	답	3,375	160	이*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이*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1		213-4	도	46	4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12		213-5	답	3	3	김*명	옥구군 개정면				
13		213-7	도	165	16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14		213-8	답	195	195	이*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이*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5		214	답	1,560	1,560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동춘동지점)	근저당	
16		214-3	답	7	7	진경건설	군산시 법원로 17, 2층(조촌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신탁	
17		214-4	도	56	7	국	농림수산부				
18		214-5	도	26	26	국	농림수산부				
19		214-7	답	65	21	국	건설교통부				
20		214-8	도	1,066	97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1		214-9	답	86	27	국	건설교통부				
22		216-7	도	2	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3		216-10	도	90	9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4		216-11	답	570	19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5		216-14	답	308	180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6		564	도	2,168	292	국	건설부				
계	26필지			16,653	4,724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소로1-379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개정면 통사리	212-5	답	895	895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		212-8	답	347	347	진경건설	군산시 법원로 17, 2층(조촌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신탁	
3		216-11	답	570	551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4		216-14	답	308	128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계	4필지			2,120	1,921						

군산시 공고 제2022 - 2572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변경인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9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
      2)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65,379.5m²

가. 도 로(19개 노선) : 47,851.8㎡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도로	6광장	건고228 ('86.5.23)	
시행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도로	6광장	-	
결정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09 (326)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09 (326)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1	119	23	집산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1	119	23	집산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1	120	21~27	집산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1	120	21~27	집산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도로	-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6 (535)	중로2-65	대로1-4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6 (535)	중로2-65	대로1-4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2	144	15	집산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4	15	집산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2	145	15	집산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5	15	집산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2	146	15	집산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6	15	집산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3	74	12	국지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용지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4	12	국지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용지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3	75	12	국지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5	12	국지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3	76	12	국지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6	12	국지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도로	-	-	
결정	소로	3	774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4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전용도로	-	-	
결정	소로	3	775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5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전용도로	-	-	
결정	소로	3	776	6	특수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6	6	특수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전용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결정	소 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 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 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 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 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 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 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 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나. 주차장(1개소)(변경) : **2012.3㎡**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결정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 2-66	2,012.3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 2-66	2,012.3	-	

다. 녹 지(4개소)(변경없음) : 12,482㎡(도로 중복결정 142㎡)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변)	2,595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변)	2,595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변)	3,971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변)	3,971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변)	1,878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변)	1,878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변)	4,038 (142)	군산고2014-141 (2014.12.26)	중복 결정
시행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변)	4,038 (142)	-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라. 공공공지(1개소) : 3,033.4㎡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2-53	3,033.4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2-53	3,033.4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1) 사업시행자 주소

당 초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디오션시티퍼스트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 ㈜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변 경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32, 3층

2) 사업시행자 성명

당 초

- 페이퍼코리아(주), ㈜디오션시티퍼스트, ㈜디오션시티쓰리

변 경

- 페이퍼코리아(주), ㈜디오션시티쓰리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당 초

- 1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 08. 31.
- 2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4. 30.
- 3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03. 31.
- 4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12. 31.

변 경

- 1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 08. 31.
- 2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4. 30.
- 3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03. 31.
- 4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토지 및 공공시설물

5.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대로 2-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87	장	23,414	41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3,414	415						

2) 대로 3-48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87	장	24,275	8,64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조촌동	2-29	장	625	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3	조촌동	2-30	장	1,863	1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6,763	8,662						

3) 중로 1-11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2	조촌동	41-23	장	8,163	3,99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3	조촌동	41-30	장	93	9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	조촌동	3964	도	20,062.8	4,072.8	군사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5	조촌동	41-34	장	1,592	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1,654.8	4,074.8						

4) 중로 1-120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87	장	23,414	10,59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조촌동	3964	도	20,062.8	68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3	조촌동	41-33	장	610	61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4	조촌동	2-103	장	45	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5	조촌동	2-104	장	45	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44,176.8	11,975						

5) 중로 2-14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3	장	42,177	1,8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합 계				42,177	1,822						

6) 중로 2-143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26	장	1,975	1,97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조촌동	3964	도	20,062.8	5,11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3	조촌동	41-34	장	1,592	1,59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4	조촌동	41-16	장	29	29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5	조촌동	2-30	장	1,378	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5,036.8	8,713						

7) 중로 2-14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36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366						

8) 중로 2-14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26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1,262						

9) 중로 2-14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42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425						

10) 중로 3-74(폐지)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3	장	85,561	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합 계				85,561	9						

11) 중로 3-7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3	도	42,177	1,99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합 계				42,177	1,991						

12) 중로 3-7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7,19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7,194						

13) 소로 3-77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3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132						

14) 소로 3-77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3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132						

15) 소로 3-77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7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171						

16) 소로 3-777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7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171						

17) 소로 3-778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1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117						

18) 소로 3-77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1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115						

19) 소로 3-780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1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062.8	114						

(2) 주차장

1) 주차장 8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6	차	2,012.3	2,012.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2,012.3	2,012.3						

나. 공간시설

(1) 녹지

1) 완충녹지10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암동	320-28	장	162	16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2	구암동	321-18	대	28	28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1245(비응도동)				
3	구암동	321-20	대	55	55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1245(비응도동)				
4	조촌동	2-24	장	2,350	2,35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합 계				2,595	2,595						

2) 완충녹지110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암동	274-12	장	2,345	2,3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구암동	276-4	대	22	2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3	구암동	276-23	대	14	1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4	조촌동	2-27	장	842	84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5	조촌동	2-29	장	570	56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6	구암동	274-15	장	121	12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7	구암동	276-27	대	1	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8	조촌동	2-100	장	62	6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3,977	3,971						

3) 완충녹지111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0	장	1,378	1,36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조촌동	2-88	장	518	51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1,896	1,878						

4) 완충녹지11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6-12	구	48	4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조촌동	36-14	구	20	2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3	조촌동	50-5	구	107	10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4	조촌동	50-7	구	71	7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5	조촌동	55-2	구	37	3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6	조촌동	55-3	구	19	19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7	조촌동	2-32	장	597	59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8	조촌동	2-92	장	27	2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9	조촌동	41-25	장	457	45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0	조촌동	41-28	장	2,240	2,24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1	조촌동	41-18	장	2	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2	조촌동	41-19	장	345	3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3	조촌동	41-22	장	57	5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4	조촌동	57-1	구	1	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5	조촌동	57-3	구	3	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6	조촌동	704-5	도	5	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7	조촌동	704-8	도	2	2	국토교통부					
합 계				4,038	4,038 (142)						

※( )는 중복결정 면적임

(2) 공공공지(변경)

1) 공공공지 33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5	도	3,033.4	3,033.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3,033.4	3,033.4						

익산시 고시 제2022-201호

익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익산시 고시 제2020-83호(2020.6.15.)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익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산시장
2022년 12월 9일

▣ 익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8	군익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산시 모현동1가 660-5번지 일원	11,986	증)11.2	11,997.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38	익산시 모현동1가 660-5번지 일원	11,997.2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정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830	8.5	보조간선	155	대로3-9 모현동1가 811도	소로2-820 모현동1가 656-6도	일반도로		금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8	1	11,986	증) 11.2	11,997.2	①	10,408	①	10,375.6	감)32.4	공동주택용지 [익산시 고시 제2022-89호 (2022.05.11.) 반영]
					②	1,578	②	1,621.6	증)43.6	도로용지(무상귀속)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①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 이		• 28층 이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 96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830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모현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 분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당초	변경	
소로 2-830	8.5	155	1,615	1,621.6	개설후 기부채납
계			1,615	1,621.6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 성 명 : 코리아신탁(주) 대표 백 인 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10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1.06.04.
   ○ 준공예정일 : 2022.12.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당초]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익산시 모현동1가									
1	659-2	도	128	12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	659-3	전	36	3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3	660-6	도	10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4	660-7	도	26	2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5	660-8	도	43	4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6	660-9	도	56	5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7	660-14	도	60	6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8	660-15	대	142	14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9	660-16	대	98	9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0	660-17	대	142	14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1	660-18	대	86	8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2	660-19	대	90	9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3	660-20	도	9	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4	661-2	도	2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5	661-3	전	55	5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6	661-4	도	8	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7	662-3	전	3	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8	723-7	도	10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9	723-12	도	16	1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0	723-14	도	5	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1	723-15	대	13	1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2	723-16	대	93	9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3	723-17	대	77	7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4	723-19	도	49	4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5	758-46	도	1	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6	758-50	종	169	16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7	806-112	도	21	2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8	806-120	도	63	6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 익산시 송학동									
29	283-3	대	5	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30	283-22	종	48	4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31	283-23	전	28	2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32	284-14	종	11	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33	878-69	도	12	1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합 계			1,615	1,6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확정측량성과		
					성 명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
○ 익산시 모현동1가									
1	659-2	도	128	12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	659-3	전	36	3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3	660-6	도	10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4	660-7	도	26	2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5	660-8	도	43	4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6	660-9	도	56	5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7	660-14	도	60	6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8	660-15	대	142	14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9	660-16	대	98	9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0	660-17	대	142	14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1	660-18	대	86	8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2	660-19	대	90	9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3	660-20	도	9	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4	661-2	도	2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5	661-3	전	55	5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6	661-4	도	8	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7	662-3	전	3	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모현동 961	도로	1621.6
18	723-7	도	10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19	723-12	도	16	1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0	723-14	도	5	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1	723-15	대	13	1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2	723-16	대	93	9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3	723-17	대	77	7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4	723-19	도	49	4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5	758-46	도	1	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6	758-50	종	169	16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7	806-112	도	21	2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28	806-120	도	63	6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 익산시 송학동									
29	283-3	대	5	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30	283-22	종	48	4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31	283-23	전	28	2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32	284-14	종	11	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33	878-69	도	12	1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10층			
합 계			1,615	1,615				1필지	1621.6

정읍시 고시 제2022-99호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우체국)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정읍우체국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우체국)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2년 12월 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당 초) 정읍시 연지동 506-7번지 외 22필지
   - (변 경) 정읍시 연지동 506-7번지 외 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우체국)사업
   ○ 명칭 : 정읍우체국 건립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면 적		3,870㎡	**3,865.7㎡**	감) 4.3㎡
규모	건축면적	2,211.24㎡	**2,137.70㎡**	감) 37.3㎡
	연 면 적	5,640.29㎡	**5,711.81㎡**	증) 71.5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74(율곡동)
   ○ 성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조달센터)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익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따로붙임”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변경)

(당초)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 리 자			비 고
	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계			23필지		4,120	3,870						
1	정읍	연지동	64-4	대	58	58	국(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	〃	〃	64-6	대	71	71	〃					
3	〃	〃	64-7	대	7	7	〃					
4	〃	〃	64-9	대	37	37	국 (기획재정부)					
5	〃	〃	64-10	대	17	17	국(과학기술 정보통신부)					
6	〃	〃	65-2	제	154	3	노병준	순창군 쌍치면 운화리 508				
7	〃	〃	65-3	대	490	490	노주섭	연지동 238				
8	〃	〃	65-10	대	52	52	국(과학기술 정보통신부)					
9	〃	〃	65-14	유	33	31	정한식	시기동 267-20				
10	〃	〃	65-17	대	348	348	국(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1	〃	〃	65-22	도	37	37	〃					
12	〃	〃	65-23	대	1	1	노주섭	연지동 238				
13	〃	〃	65-26	제	5	5	노병준	순창군 쌍치면 운화리 508				
14	〃	〃	506-7	대	892	892	국(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5	〃	〃	506-50	대	38	38	〃					
16	〃	〃	506-51	대	32	32	〃					
17	〃	〃	506-60	대	201	201	〃					
18	〃	〃	506-69	대	162	162	〃					
19	〃	〃	506-79	대	1,355	1,355	〃					
20	〃	〃	506-123	대	5	5	〃					
21	〃	〃	506-125	대	11	11	〃					
22	〃	〃	506-129	대	8	8	〃					
23	〃	〃	506-165	대	106	9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 리 자			비 고
	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계			7필지		3,865.7	3,865.7						
1	정읍	연지동	64-9	대	36.8	36.8	국(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	〃	〃	64-10	대	17.1	17.1	〃					
3	〃	〃	65-14	유지	31	31	〃					
4	〃	〃	65-22	도로	37	37	〃					
5	〃	〃	65-26	제방	7.9	7.9	〃					
6	〃	〃	506-7	대	3,731	3,731	〃					
7	〃	〃	506-123	대	4.9	4.9	〃					

김제시 고시 제2022-118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12월 9일

Ⅰ.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김제시 하동 404-1번지 일원	65,698	-	65,698	김제시고시 제1997-26호 (97.9.23.)	

Ⅱ.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Ⅲ.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Ⅳ.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 하동 40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김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명 칭 :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부지 면적 : 9,231㎡
- 사업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건물명	층수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소 계		622.5	854.66	622.5	1,186.50	-	(증)331.84	
노인종합복지관	1층	622.5	269.66	622.5	564.00	-	(증)294.34	
	2층		585.00		622.50		(증)37.50	
	옥탑		20.48		20.48		-	(바닥면적 제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제시장(여성가족과)
-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시	동	지 번						
	계				9,231	9,231			
1	김 제	하	404-1	대	7,344	7,344	김 제 시	“없음”	
2	〃	〃	404-10	구거	149	149	김 제 시	“없음”	
3	〃	〃	404-11	대	1,738	1,738	김 제 시	“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건축물조서

건물(동별)	건물명	층수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계		1,840.86	2,199.39			
주1동	노인종합복지관	1	622.50	854.66	김 제 시	“없음”	
주2동	실내게이트볼장	1	985.18	967.01	김 제 시	“없음”	
주3동	공동작업장(2층 경로당)	2	233.18	377.72	김 제 시	“없음”	

7. 관계도서(도면) : 실음생략

■ 붙임1 : 세부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 설 명	부 지 면 적(㎡)			건축면적(㎡)			연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65,698.00	65,698.00		12,417.714	12,417.714		48,125.6076	48,192.9476	증)67.34	건폐율 18.90%
건축시설	소계	28,279.41	28,279.41		12,417.714	12,417.714		48,125.6076	48,192.9476	증)67.34	용적률 73.36%
	주거동1	6,812.00	6,812.00		1,769.027	1,769.027		9,408.3980	9,408.3980		지하1층, 지상5층
	주거동2	5,515.28	5,515.28		3,717.317	3,717.317		27,118.0896	27,118.0896		지하1층, 지상7층
	종합복지관	1,486.00	1,486.00		700.190	700.190		1,715.4900	1,715.4900		지하1층, 지상2층
	요양원	1,438.00	1,438.00		952.120	952.120		2,725.8800	2,725.8800		지하1층, 지상2층
	경비실	9.60	9.60		9.600	9.600		9.6000	9.6000		지상1층
	노인정 및 관리사무실	105.84	105.84		105.840	105.840		105.8400	105.8400		지상1층
	노인회관	1,732.00	1,732.00		572.460	572.460		1,212.9300	1,212.9300		지상3층
	전기실및펌프실	383.00	383.00		18.600	18.600		194.7000	194.7000		지하1층, 지상1층
	생활편익시설	120.72	120.72		120.720	120.720		120.7200	120.7200		지상1층
	체육시설 (실내게이트볼장)	985.18	985.18		985.180	985.180		967.0100	967.0100		지상1층
	경로당	528.00	528.00		233.180	233.180		377.7200	377.7200		지상2층
	저온창고	40.00	40.00		40.000	40.000		40.0000	40.0000		지상1층
	세탁물처리시설	50.00	50.00		50.000	50.000		50.0000	50.0000		지상1층
	체육시설 (전천후게이트볼장)	1,552.79	1,552.79		1,552.790	1,552.790		1,493.4700	1,493.4700		지상1층
	노인종합복지관	2,605.00	2,605.00		622.500	622.500		1,119.1600	1,186.5000	증)67.34	지상2층
	가족센터	4,916.00	4,916.00		968.190	968.190		1,466.6000	1,466.6000		지하1층 지상2층
옥외시설	소계	37,418.59	37,418.59		-	-		-	-		
	운동시설	375.82	375.82		-	-		-	-		
	주차장	3,551.00	3,551.00		-	-		-	-		
	원예치료원	1,465.00	1,465.00		-	-		-	-		
	도로	9,036.00	9,036.00		-	-		-	-		
	녹지	17,489.77	17,489.77		-	-		-	-		
	실버나눔숲	5,501.00	5,501.00		-	-		-	-		

김제시 고시 제2022-12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김제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12월 9일

1. 사 업 명 : 김제시 하동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베이스 (대표자 오영근)

나.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신복3길 8(팔복동1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김제시 하동 산37-10번지외 3필지

나. 대지면적 : 5,948㎡

다. 건축면적 : 1,348.7830㎡

라. 연 면 적 : 18,065.0559㎡

마. 규 모 : 123세대 (주2개동/지하1층,최고20층)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민간분양

아. 사업기간 : 2022. 12. ~ 2025. 10.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협의한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김용기(☎540-37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공고 제2022-1782호

완주 군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완주군 구와배수로 조성을 위한 완주 군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전에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12월 9일

Ⅰ.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338-2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나. 명 칭 : 방수설비(구와배수로)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A=17,928㎡, L=1,700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기정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변경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기정 : 2020. 3. 20 ~ 2022. 12. 31.
   변경 : 2020. 3. 20 ~ 2023.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게재생략
7. 열람(의견제출)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8. 열람(의견제출)장소 :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전북단지사업부(063-230-6475)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고시 제2022-140호

진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825번지 일원의 전라북도 고시 제2007-113호(2007. 5. 18.)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합니다.

진안군수
2022년 12월 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가. 기 정 :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80-1번지 일원
나. 변 경 :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825번지 일원
다. 사 유 :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변경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진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나. 명 칭 : 동전주 써미트 C.C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가. 면 적 : 1,405,820.5㎡
나. 규 모 : 대중골프장 27홀
다. 토지이용계획 (단위: ㎡)

계	체육용지	건축시설	공공시설	원형녹지	조성녹지
1,405,820.5	276,721	27,962.1	109,609	559,607	431,921.4

라. 건축물 개요

구 분			면 적(㎡)			구조	비고
동	용도	층	기 존	증축면적	합 계		
주1동	클럽하우스	지하1층	2,183.43	-	2,183.43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2,798.76	55.665 10.8	2,865.225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락카실 비가림시설
		옥탑1층	37.88	-	37.88	철근콘크리트조	
부1동	카트보관소	지상1층	-	328.20	328.20	경량철골조	신축
부2동	차고	지상1층	-	67.00	67.00	경량철골조	신축
부3동	창고	지상1층	-	63.19	63.19	경량철골조	신축
소 계			4,982.19	524.855	5,507.04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식회사 써미트

나. 주 소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고

7. 관계도서는 진안군청 건설교통과(☎063-430-243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구분	위치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부귀면 봉암리	817	체	3,669.0	3,669.0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2	부귀면 봉암리	818	체	814,582.4	814,582.4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3	부귀면 봉암리	819	체	200.0	200.0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4	부귀면 봉암리	820	임	3,631.8	3,631.8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5	부귀면 봉암리	821	임	2,062.7	2,062.7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6	부귀면 봉암리	822	임	1,656.5	1,656.5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7	부귀면 봉암리	823	임	164,032.9	164,032.9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8	부귀면 봉암리	824	체	154.0	154.0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9	부귀면 봉암리	825	체	21,185.0	21,185.0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10	부귀면 봉암리	826	임	10,581.3	10,581.3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11	부귀면 봉암리	827	체	658.0	658.0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12	부귀면 봉암리	828	임	2,345.4	2,345.4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13	부귀면 봉암리	829	체	5,165.0	5,165.0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14	부귀면 봉암리	830	체	200.1	200.1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15	부귀면 봉암리	831	임	1,026.3	1,026.3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16	부귀면 봉암리	832	임	1,598.0	1,598.0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17	부귀면 봉암리	833	체	200.0	200.0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18	부귀면 봉암리	834	임	8,223.1	8,223.1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19	부귀면 봉암리	835	체	200.0	200.0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20	부귀면 봉암리	836	임	364,449.0	364,449.0	㈜써미트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72-16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신탁
계		20필지		1,405,820.5	1,405,820.5					

부안소방서 공고 제2022-14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려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 안 소 방 서 장
2022년 12월 8일

1. 대 상 자
   가. 성 명 : 김승헌(생년월일 : 831204-1******)
   나.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3길 20 보석빌라 202호(인후동1가)
2. 위반내용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함.
3. 위반법규 :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4. 부과금액 : 과태료 금2,492,000원(금이백사십구만이천원)
5. 부과연월일 : 2022. 12. 08.
6. 납부기한 : 2023. 01. 09.
7. 납부방법 : 부안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23139)
8.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80-1243)